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53조의 요약

-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국외지점·비거주자 또는 다른 외국법인과 거래한 거래금액에 대해 조세조약체결 상대방국가와의 당국간 합의에 의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계산 가능함.
- 소득금액조정신청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득금액조정 신청일은 상호합의절차의 종결통지일로부터 2월 이내임.

●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1. 본 조의 개관

① 본 조의 개요

본 조는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과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내국법인의 지점,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거래금액에 대해 정부와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국법인이 소득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를 요청하며 관할세무서장 등은 조약체결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하여 당해 요청법인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제반 내용은 뒷부분의 국제조세조정예관법률에 의한다.

② 소득금액조정계산 특례규정의 이유

국가간에 체결되는 조세조약은 각 국의 국내법이 서로 다르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국제간 교류를 촉진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되는데 이러한 조약의 기본이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세권의 경합 및 과세방법과 이론의 차이 등과 같이 양체약국이 상호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조세조약은 당해 조약의 적용상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체약국의 정부간에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제도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약에서도 상호협의 절차에 관한 조문을 두고 있다.

조세조약은 주로 일반적 과세원칙만을 규정할 뿐 그 구체적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조약의 시행절차는 각 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양국의 국내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집행되는 과정에서 당해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양국의 의견이 다르거나 기타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도 많다.

본 조의 규정을 통하여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이 제시된 것이며 본 규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은 조세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의 양국간 상호합의로서 양채약국의 행정부의 결정을 구속할 수 있다고 본다.

II.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계산

(법 제53조제1항)

1. 소득금액조정계산의 범위

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조정

조세조약상의 상호합의에 의거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은 각 개별 거래금액이나 개별 사항의 세율 등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한한다. 또한 조세조약 상대방국과 상호합의된 것에 한하는데 상호합의대상은 일반적인 과세적용방법론 등이 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거래, 각 개별법인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소득조정방법을 결정할 수도 있다.

② 소득조정대상이 되는 거래금액

본 조는 외국과의 조세협약상의 상호합의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내국법인의 지점,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만 권한있는 당국간의 합의에 의거 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에서 열거된 관계 이외의 거래는 비록 내국법인이 타당한 증거로서 요청하더라도 소득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세협약상 상호합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상호합의절차」 조문상의 규정으로서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상호합의, 당해 조약의 해석 또는 시행상 발생하는 문제의 상호합의, 당해 조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한 상호합의 및 해당 조문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당해 조약의 각 조문에서 상호합의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위한 상호합의 등이 있다.

③ 소득금액조정의 요건인 권한있는 당국간의 합의

양국간의 상호협의를 권한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ies)간에 이루어지는 데 여기서 ‘권한있는 당국’의 정의는 각 조세조약의 ‘일반적 정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경우의 권한있는 당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조세조약상의 상호합의규정과 내용

1) 조세조약상의 상호합의조문 내용

①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의 조문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상의 상호합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자국 또는 타방체약국으로부터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위배되는 과세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는 자기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권한있는 당국은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정당하지만 자국만으로는 당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당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조약상의 상호합의규정 비교

OECD 모델

1.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조치가 일방국의 인에 대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인이 생각하는 경우, 그는 각국내법이 규정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의 거주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동사안이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사안은 이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를 최초로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UN 모델

1. 어느 일방 또는 쌍방체약국의 조치에 의해서 본 조약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과세를 당하거나 또는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자는 동 사안에 대해서 동 체약국의 법령에 정한 구제수단과는 별도로, 자기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해서 또는 동 사안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이의제기는 본 조약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과세에 관련된 동 조치의 최초의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 | | |
|--|--|
| <p>2. 권한있는 당국이 위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나 스스로 만족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 조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이에 따른 상호합의는 체약국 국내 법상 시한에 관계없이 시행된다.</p> <p>3.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본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분쟁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본 조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서도 상호협의를 할 수 있다.</p> <p>4.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기 제1항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구두의 의견교환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p> | <p>2. 권한있는 당국은 상기 제1항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나 만족스런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조약의 규정에 적합치 않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동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이루어진 모든 합의는 양체약국의 법령상 어떠한 기간제한에도 불구하고 실시하도록 한다.</p> <p>3.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본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분쟁 또는 의문을 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또한 본 조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해서 상호협의를 할 수 있다.</p> <p>4.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기 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직접 상호통신할 수 있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본 조에 규정된 합의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적당한 절차, 조건 및 방법을 합의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전기 양국간의 조치 및 합의절차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내의 적당한 절차, 조건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다.</p> |
|--|--|

② 각 체약국의 조세조약 이의신청·상호합의 관련조문

항 목		이 의 신 청	상 호 합 의
조세협약체결 국가명			
OECD 모델조약		3년이내 이의제기 가능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로 해결
UN 모델조약		본국당국에 3년 이내 이의제기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로 해결
1	일본(Japan)	—	—
2	태국(Thailand)	—	—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3	독일(Germany)	—	—
4	영국(United Kingdom)	—	—
5	덴마크(Denmark)	—	—
6	벨기에(Belgium)	OECD와 유사	OECD와 유사함.
7	미국(U.S.A)	—	—
8	캐나다(Canada)	2년이내 이의제기 가능	OECD와 유사함.
9	프랑스(France)	OECD와 유사	OECD와 유사함.
10	싱가폴(Singapore)	—	—
11	네덜란드(Netherlands)	—	—
12	스위스(Switzerland)	OECD와 유사	OECD와 유사함.
13	핀란드(Finland)	OECD와 유사	OECD와 유사함.
14	스웨덴(Sweden)	OECD와 유사	OECD와 유사함.
15	말레이시아(Malaysia)	OECD와 유사	OECD와 유사함.
16	뉴질랜드(New Zealand)	OECD와 유사	OECD와 유사함.
17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2년이내 이의제기 가능	OECD와 유사함.
18	노르웨이(Norway)	OECD와 유사	OECD와 유사함.
19	방글라데시(Bangladesh)	OECD와 유사	OECD와 유사함.
20	터어키(Turkey)	—	—
21	스리랑카(Sri Lanka)	OECD와 유사	OECD와 유사함.
22	인도(India)	OECD와 유사	OECD와 유사함.
23	필리핀(Philippines)	2년 이내 이의제기 가능	OECD와 유사함.
24	룩셈부르크 (Luxembourg)	OECD와 유사	OECD와 유사함.
25	파키스탄(Pakistan)	OECD와 유사	OECD와 유사함.
26	오스트리아(Austria)	OECD와 유사	OECD와 유사함.
27	헝가리(Hungary)	OECD와 유사	OECD와 유사함.
28	브라질(Brazil)	—	—
29	아일랜드(Ireland)	OECD와 유사	OECD와 유사함.
30	이태리(Italy)	2년 이내 이의제기 가능	OECD와 유사함.
31	베트남(Vietnam)	OECD와 유사	OECD와 유사함.
32	중국(China)	OECD와 유사	OECD와 유사함.
33	스페인(Spain)	OECD와 유사	OECD와 유사함.
34	러시아(Russia)	OECD와 유사	OECD와 유사함.

* 이하 각 체약국들도 비슷함.

2)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절차의 일반적 방법

① 이익제기요건 및 이익제기하는 거주지국

납세자는 체약국으로부터 당해 조약규정에 위배되는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되려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국내법상의 이익신청절차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있는 후에만 가능한 것이나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는 납세자가 “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조세가 부과되거나 고지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사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납세자는 자기의 거주지국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조세조약에 위배되는 과세가 거주지국이 아닌 원천지국에서 부과되었다 할지라도 원천지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거주지국인 본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법인의 일본지점이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 조세조약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을 당하였다면 한국의 권한있는 당국인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물론 그 한국법인 일본지점은 일본 국내법상 규정된 이익신청 절차에 따라 일본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익제기와는 별개의 것이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국민이며 타방국의 거주자인 납세자가 그 타방국에서 타방국의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과세를 당한 경우에는 그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익제기내용의 정당성 판단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납세자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에는 첫째로 그 내용이 정당한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된다. 납세자의 이익내용이 정당한 경우, 문제가 되는 과세가 자국(거주지국)의 과세조치인 경우에는 자국내에서 조정 또는 감면을 통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과세조치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부간 상호합의절차는 필요없게 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과세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대체약국의 조치에 기인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절차를 발동하여야 하며, 이는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세관청 등)의 의무이다.

③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의 이의신청절차

납세자는 국내법상 구제제도나 절차에 상관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즉, 납세자가 국내법에 의한 구제제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 등)를 완전히 활용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술한 사례의 경우 한국 법인의 일본지사는 일본 국내법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또는 국내법상 이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조약에 의하여 한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조약에서는 납세자의 이의신청절차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체결국이 적절한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를 위해 본 조가 신설된 것이다.

④ 이의제기 시한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전혀 언급이 없는 조약과 기한을 설정하고 있는 조약이 있다. 조세조약에서 전혀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법상 시한(time limits)에 따라야 할 것이다. 조세조약에서 시한을 규정하는 목적은 행정의 보호 및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캐나다·필리핀·이태리와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조세조약의 규정에 위배되는 과세조치의 최초 통지일(first notification)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벨기에·불란서 등과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3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과세조치의 최초 통고일”은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OECD모델협약」의 입장이다. 납세자의 이의신청 기한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의 제 기 시 한 ▣

이의제기시한	조 약 국
3년 이내 (OECD 및 UN모델협약)	벨기에·프랑스·스위스·핀란드·스웨덴·뉴질랜드·말레이시아·이집트·인도·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스리랑카·호주·모로코·노르웨이·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베트남·중국·스페인·러시아
2년 이내	캐나다·필리핀·이태리

규정없음 (각국의 국내법에 따름)	터어키 · 독일 · 영국 · 덴마크 · 일본 · 미국 · 브라질
-----------------------	-------------------------------------

⑤ 상호합의방법과 절차

양채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협의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는 순전히 양채약국의 의사에 달려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신방법에 의한다. 그러나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당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에는 구두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으며, 양국대표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joint commission)를 구성하여 합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제기된 당해 문제가 납세자에 대한 과세처분과 관련되어 있다면 당해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조세문제 전문가 등의 협조수탁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상호합의절차와 관련하여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외교경로(diplomatic channels)를 통하지 않고 채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직접적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상호합의대상의 범위와 요과 및 법적 의무

① 조세조약의 효율적 시행과 이중과세방지 목적의 합의

이밖에 OECD모델 및 UN모델협약 제25조제3항은 양채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당해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협의를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양채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 조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배제를 위하여도 상호협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채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당해 조세조약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은 이중과세라 하더라도 이의 제거를 위하여 상호협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3국의 거주자가 양채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 일방채약국에 소재하는 제3국 거주자의 고정사업장이 타방국에 있는 그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에 양채약국간에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채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와 같은 이중과세를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이중과세의 방지에 대한

협의를 의무사항이 아니라 각국의 임의사항이다.

② 상호합의내용의 예시

본 규정에 의하여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협약하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 하나의 용어가 조세조약에서 불완전하게 또는 모호하게 정의된 경우 분쟁을 제거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를 완전하게 하거나 명확히 하는 것
- ◎ 배당·이자 또는 사용료에 대한 소득원천지국에서의 제한세율 적용방법⇨ 우리나라는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벨기에·네덜란드 정부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거주자증명제도를 채택한 바 있다.
- ◎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그 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산업상 또는 상업상 이윤을 동일하게 귀속시키는 문제⇨본점의 경영 및 일반관리비 중 고정사업장에 배부할 기준 및 금액의 협의 등
- ◎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간에 소득을 동일하게 배분시키는 문제 ⇨ 지급자와 수익적 소유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사용료가 초과지급된 경우 동 초과지급분에 대한 과세문제의 협의 등
- ◎ 특정소득항목에 대하여 원천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문제
- ◎ 소득 및 비용을 일관성있게 계산하는 문제
- ◎ 세법개정에 따른 문제점해결을 위한 협의, 특히 서명일 이후에 소득에 대한 조세가추가제정되는 경우 대상조세에 포함시키는 문제
- ◎ 조세조약에서 최혜국조항을 채택한 경우, 예를 들면 한·호 조세조약의정서 제4, 5, 6항에서는 한국 또는 호주가 향후 제3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상대체약국보다 특정사항에 대하여 많은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상대국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상호협의를 통하여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상호합의의 의무와 합의내용의 시행문제

조세조약상 「상호협약절차」에 관한 조문이 양체약국에 협상의무만을 부여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할 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조세조약상 상호협약의 조항은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의무만을 부여할 뿐 반드시 어

면 합의에 도달할 의무까지 지우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협약의 결과 합의에 도달한 경우 동 합의 내용은 각국의 국내법상 시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각 국의 재정시효에 따라야 하며, 조세조약에서 국내법상의 시한에 관계없이 시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는 핀란드·스웨덴·말레이시아·호주·모로코·노르웨이·방글라데시·룩셈부르크·스리랑카·인도네시아 등과의 조세조약에서 상호합의내용은 국내법상 시효에 불구하고 시행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조약상 상호협약절차조문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④ 상호합의와 법원의 결정

한국법원에 계류중인 사안에 대하여 상대국이 한국에게 상호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행정부를 구속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결이 내릴 때까지 상호협의를 연기하는 것이 법원판결과 상호합의내용과의 상충 또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 법원의 판결이 내린 후에는 판결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국과 상호합의하여야 한다.

한국의 과세조치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한국과 상대국 간에 상호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동 납세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한국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아직 계류중인 경우에는 그 납세자가 상호합의 결과를 수락한다면 동 합의내용은 동 소송을 납세자가 철회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법인세법상의 소득금액 조정절차와 상호합의방법

(법 제53조제2항)

① 법인세법상의 소득금액 조정절차

한국이 체결한 조세협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의거 과세처분 최초통지일로부터

터 2년 혹은 3년 이내 상호합의한다. 별도의 협약상 이의제기시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거한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91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규정상의 조정절차 및 소득금액조정을 하는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여 적용함이 일반적이다.